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구역 의회 의견 청취 의견

제작
번호 Z071

제출년월일 : 2010. 11. 19.
제출자 : 안산시장

1. 제안사유

-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이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들이 나수인 단독주택지로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2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 폐작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공원, 농지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추가확보 등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법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신설로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주민제안하였으며
-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실질	선부동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5번지 일원	12,087.10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반영

1. 주거구조 계획

1) 주거이용 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설명
합계	12,087.10	100	전체 주택
공동주택 면적	10,399.00	86.03	공동주택 면적 부대 복리시설
주택	1,688.10	13.97	개별사설주택
공동사설용지 면적	1,590.80	13.16	"
도로	97.30	0.81	"

2) 건축물의 주용도·건축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명	구 분	제한 대상	비고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 폐 율	19.78%	기존 세대수 : 302세대 계획 세대수 : 219세대
신부동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동주택)	용 적 율	229.88%	(83세대 감소)
	최고 높이	평균 18층 이하 (최고 18층, 최저 13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한계선	종로 1-19-1 번 : 3m 종로 1-16-1 번 : 3m 소로 2-99-10 번 : 3m	건축한계선 3m 적용

3)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휴게시설
면적(m ²)	113.69	460.00	1,002.09	787.93	91.24	722.86		104.23	1개소

3. 결론

○ 첨부서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성원개혁법 2010. 7월 1일 도시기본법
정비 기본계획 법위 대안 주식률 220.88%, 단계율 19.78%, 투수율 5.0%
[8년이하(13~18층)도시] 기준계획에 적합하고

(1) 관내부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사회회복과 협
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및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성비개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동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개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
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개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첨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요약 1부. 끝.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 상위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의 용적률 230%, 건폐율 60% 및 층수는 평균층수 18층이하(최고층수 25층)로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해하기 바람.
-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건축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 주변경관과 부합되게 스카이라인을 유지하여 조망권, 일조권 확보와 녹지공간 확대로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